



2023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 ☐ 회의명: 2023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 ☐ 회의일시: 2024.02.15.(목) 17:00
- ☐ 회의장소: 대학본관 2층 대회의실
- ☐ 출석인원: 의원정수 9명 중 6명 참석
 - 위원장(1명): 김경화
 - 위 원(5명): 김성원, 심성용, 김문수, 정영훈, 오준오
- ☐ 불참인원: 의원정수 9명 중 3명 불참
 - 위 원(3명): 이성율, 박진영, 임효빈
- ☐ 참석교직원: 1명 (기획부 홍성표)
- ☐ 회의안건
 - 제1호 -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 제2호 -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안) 심의
 - 제3호 -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원칙(안) 심의
 - 제4호 - 2024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 승인(안) 심의

I. 개회

- ☐ 2023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시작 안내, 조민준 간사의 성원 보고가 있었고, 김경화 위원장의 개회 선언과 인사말씀이 있었음

II. 회의안건

	김경화 위원장	김성원 위원	심성용 위원
<간서명>	김 경 화	김 성 원	심 성 용

안건 제1호 및 제2호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안) 심의
-----------------	--

- ☐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함
-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예산 자금예산서(안)
 -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 자금예산서(안)
 - 각 교비회계 수입/지출 주요 변동사항
- ☐ 정영훈 위원이 2023회계연도 기금 적립 규모 및 누적 적립 기금 규모에 대해 질의함
- ☐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제8차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심의한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기금 적립 계획을 설명하고, 적립 규모 및 당해연도 2월말 기준 누적 적립기금에 대해 설명함
- ☐ 김성원 위원이 2023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 예산 대비 2024회계연도 본예산의 등록금회계 관리운영비·연구학생경비 추이에 대해 질의함
- ☐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2023회계연도에서 2024회계연도로 넘어가며 등록금회계 관별 예산 계정마다 각각 7억원, 10억원 예산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2023회계연도에 이루어진 강도 높은 예산 절감 정책이 효과를 거두면서 이전 회계연도 지출 수준으로 회복되었기에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안)이 편성되었음을 설명함
- ☐ 김경화 위원장이 회의안건 제1호 2023회계연도 교비회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호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본예산(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요청하였으나, 좌중에 이견 없이 동의하고 재청함에 따라 회의안건 제1호 및 제2호를 원안대로 심의하여 의결되었음을 선언함 (찬성: 6, 반대 0)

	김경화 위원장	김성원 위원	심성용 위원
<간서명>	김 경 화	김 성 원	심 성 용

안건 제3호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원칙(안) 심의

□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잉여금 처리 원칙(안) 수립 취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설명함

○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이월금) 및 이월금 정의와 종류

◦ 「사립학교법」 제32조의4(이월금)

- ①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해당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대학교육기관의 이월금이 재정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경우에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사립대학 이월금 처리기준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 『사립대학(법인) 회계관리 안내서』 中, 2017.01.)

- ① 결산 시 사고·명시·기타이월의 구분 명확화
- ② 연도별 당해연도 등록금회계 기타이월금은 등록금회계 수입총액(자금계산서 기준)의 아래 규모 준수
- '16년 1.7% 이내, '17년 1.4% 이내, '18년 이후 1.0% 이내
- ③ 외부회계감사 시, 이월금에 관한 사항 검토 철저
- ④ 잉여금 처리 원칙 등록금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준수

○ 등록금회계 및 비등록금회계 잉여금 발생 시 처리원칙

◦ 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 ① 등록금회계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 ② 이월금 중 사업취소 및 불용액 등의 등록금 잉여분이 존재하는 경우, 직접교육비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③ 직접교육비 중 장학금, 연구학생경비, 도서구입비 순으로 우선 편성할 것

◦ 비등록금회계 잉여금 처리 원칙

- ① 비등록금회계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서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
- ② 이월금 중 사업취소 및 불용액 등의 비등록금 잉여분이 존재하는 경우, 교직원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에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 기타 질의사항이 없어 김경화 위원장이 전 위원의 동의로 회의안건 제3호

	김경화 위원장	김성원 위원	심성용 위원
<간서명>	김경화	김성원	심성용

2024회계연도 교비회계 잉여금 처리원칙(안)에 대하여 가결되었음을 선언함
(찬성: 6, 반대 0)

안건 제4호	2024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안) 심의
--------	--------------------------------------

☐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사립학교법 교직원 연금법 제47조에 대하여 설명함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법인부담금)

- ①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학교경영기관이 그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 전 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학교경영기관의 재정여건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재정상태를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③ ~ ④ (생략)
- ⑤ 학교경영기관은 제3항에 따른 법인부담금을 매년 학교기관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에 필요한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의 업무 예산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부담하게 된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획부 홍성표 직원이 2024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1,344,000 천원 중에서 법정부담전입금 예정액 110,000 천원을 제외한 1,234,000 천원 학교부담금액 신청 금액 보고 및 예산 편성에 대한 승인(안)을 보고함

☐ 기타 질의사항이 없어 김정화 위원장이 전 위원의 동의로 제4호 안건인 2023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학교부담 승인(안) 심의가 가결되었음을 선언함 (찬성: 6, 반대 0)

III. 기타토의

☐ 김정화 위원장은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간서명 대표위원 추천을 요청함

☐ 조민준 간사가 지난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간서명 자를 보고하며, 다음

	김정화 위원장	김성원 위원	심성용 위원
<간서명>	김정화	김성원	심성용

간서명자로 김경화 위원장, 김성원 위원, 심성용 위원을 추천함

☐ 전 위원이 간서명자 추천에 대하여 동의함

☐ 김경화 위원장이 2023학년도 제4차 등록금심의위원회 간서명 자로 김경화 위원장, 김성원 위원, 심성용 위원이 서명할 것을 선언함

IV 폐 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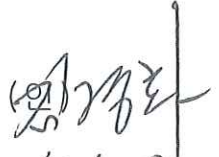
○ 본 회의록 서명을 위임하고 18:00에 폐회함

김경화

<간서명>	김경화 위원장	김성원 위원	심성용 위원
	김 경 화	김 성 원	심 성 용

위 사실을 확인함.

2024. 02. 15.

위 원 장	:	김 경 화	(인) 
위 원	:	심 성 용	(인) 
위 원	:	김 성 원	(인) 
위 원	:	김 문 수	(인) 
위 원	:	정 영 훈	(인) 
위 원	:	이 성 울	(인)
위 원	:	박 진 영	(인)
위 원	:	임 효 빈	(인)
위 원	:	오 준 오	(인) 

위와 같이 심의되었음을 통보합니다.

2024. 02. 15.

동의과학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사항은 원본과 상위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동의과학대학교총장

동 의 과 학 대 학 교 총 장 귀 하

김 영

